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500호

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,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, 차량 탈선, 구동부 고장,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범위로 규정함(안 제2조의2)
- 나.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,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(안 제3조)
- 다.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

화 및 추가 보완하고,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, 별표4)

라.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·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,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(안 제20조)

마.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,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·보고하도록 규정함. 또한,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(안 제22조)

바.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,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23조의2)

사.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(안 별표1)

아. 점검·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·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,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,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(안 별표2)

### 3. 의견제출

「궤도운송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6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이나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

철도시설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(담당사무관 : 박균성, 전화 : 044-201-4889)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보마당,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)
  -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기타 참고사항
- 보내실 곳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
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((우) 30103)